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3. 제안이유

○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,

○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공동주택 최초분양 무주택 취득자 감면기간 연장

○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년 12월 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, 2003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% 경감하던 것을

○ 2002년 12월 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연장함. (제12조)

나. 하도급업자의 대물변제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

-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. (제12조의2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무주택자의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과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본 개정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1. 5. 30일 시달되었으나,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사유와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에 대하여는

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붙 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